입 법 정 보

2019-9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4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6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노동부)····· 6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7
8.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
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9
11.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9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10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0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3
1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4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15
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5
2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6
22.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6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17
2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7
2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8
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8
28.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9
29.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3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3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1
3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3
34.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23
3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4
3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24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25
38.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5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6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6
41.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27
42.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28
4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9
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30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32
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3
4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3
4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3
4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50.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5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6

정부입법 예고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4. 22.
- 마감일자 : 2019. 6. 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법률 제16218호, 2019.1.8. 개정, 2019.7.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의 출연금 협약 체결 및 출연금 관리 규정 마련 (개정안 제8조)

나.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신설안 제9조의2)

다. 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의 선정기준 등 규정(개정안 제16조, 제22조)

라.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신설안 제16조의2)

마.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 고시·위탁업무 확대(개정안 제19조 제1항)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4. 22.
- 마감일자 : 2019. 6. 3.

○ 전동식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동식 지게차 조정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안 제3조 별표 1)

1) 현행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2)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하는 자격 등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

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교육기관 확대 (안 제4조 별표1의2)

1)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 확대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정자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22.
- 마감일자 : 2019. 6. 3.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가맹본부 및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전기업종을 포함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관하고자 함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22.
- 마감일자 : 2019. 6. 3.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22.
- 마감일자 : 2019. 6. 3.

○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지게차 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며, 건축물 또는 설비의 외부작업 시에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용접 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를 고려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22.
- 마감일자 : 2019. 6. 3.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근로계약체결 시 기숙사 관련 정보를 사전제공 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1항 신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기숙사 시설 변경 시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2항 신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사전에서면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4. 23.
- 마감일자 : 2019. 6. 3.

○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확화

○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제도 관련조문 삭제 (제2조의2)

나. 별지 삭제 (별지 제1호 및 제2호)

다.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혁신, 사업화 촉진, 기술인력의 양성·활용 및 교육, 기술교류 등을 지칭하도록 구체화 (제1조의2)

8.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23.
- 마감일자 : 2019. 6. 3.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62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고, 보건소 신고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의 면허·자격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나.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9조, 별지 제1호의2 서식)

다.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제증명의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보고 서식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 추가(별지 제2호 서식)

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4. 23.
- 마감일자 : 2019. 6. 3.

○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의 입력률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와 중복되는 건설기술 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 제고 (안 제45조)

1) 조달청이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계약 현황 정보를 송신받아 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제53조, 제54조 삭제)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135호, ‘18.12.31)에 따라 건설기술 공모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령에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4. 23.
- 마감일자 : 2019. 5. 15.

○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및 강사를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감염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교육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운영자가 감염병자를 학원에서 격리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격리대상자 범위와 격리조치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밝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의무사항 신설(안 제2조의3)

나. 신고된 행위를 교육장이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를 그 고발한 날로 명시(제17조제3항)

11.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4. 24.
- 마감일자 : 2019. 6. 3.

○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확대(안 별표4)

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4. 25.
- 마감일자 : 2019. 6. 4.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80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 공동배선으로 이뤄지는 포장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 반입신고는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 목록 등 화물정보를 제공하면 운항선사가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2) 그러나, 공동배선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 실정임.

3) 이에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25. • 마감일자 : 2019. 6. 4.

○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안경업소 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경 등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일부 예외사항 규정 (안 제12조)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은 제외하도록 정함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4. 25. • 마감일자 : 2019. 5. 7.

○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

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내용·방법 등을 규정

2)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방법 등을 규정

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1)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파 및 하 개정)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4. 26. • 마감일자 : 2019. 6. 25.

○ 화물적재 시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덮개 작동방식을 개선하고, 피견인자동차로 인해 자동차 뒷면 등화장치의 기능을 방해받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등화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운전자지원시스템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기준을 개선하고, 굴절버스 등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규정 및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하며, 이륜자동차 전자파, 에어백 경고문구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덮개 작동방식 및 작업등 조작 기준 개선(안 제32조 및 제47조)

1) 화물·특수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의 덮개의 재질, 구조 및 작동방식을 개선하고, 작업등의 조작 방법을 명확히 함.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등화장치 추가 설치 및 소방자동차 후부반사판 등 설치 기준 개선(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9조)

1)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추가적으로 후미등,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소방자동차에 한하여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및 반사띠 기준을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및 운전자 전방 시계범위 기준 개선(안 제89조 및 제94조)

1) 자율주행기능인 차로유지, 혼합정체구간주행, 고속도로오토파일럿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하고, 운행정보 제공을 위한 전방표시장치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적용을 도모함.

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기준 및 초소형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기준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90조)

1) 굴절버스 등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 제외 규정 및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 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마. 이륜자동차 전자파, 에어백 경고표기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69조의2, 제102조, 제103조 및 제112조의3)

1)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 전자파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에어백 경고표기 그림문자 적용 및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1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4. 26.
- 마감일자 : 2019. 6. 5.

○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4.2.)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정기점검방법 및 공기

를 정화하는 장치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에게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부여(안 제4조)

1) 공기질 측정을 학교의 장이 직접 실시하지 않고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거나 교육감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주체를 측정대행업자나 교육감이 실시

2) 정기점검 실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

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설치(안 제5조)

1)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공기청정기 등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이동식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정화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 등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가 정하여 고시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26.
- 마감일자 : 2019. 6. 5.

○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제4조의2, 제4조의3)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제17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하도록 개정(2019.4.16. 개정, 2019.7.17. 시행)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에서 해당사항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명시하고, ‘19년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1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29.
- 마감일자 : 2019. 6. 10.

○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등록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소속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신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장비·시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따른 등록증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1) 장비 보유수준, 관리능력, 운영체계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별표 3의2에 따른 평가 등급을 정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통보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함.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3조의2 신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4. 29. • 마감일자 : 2019. 6. 10.

○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하게 하며 현재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정 (안 제74조)

1) 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

2) 무분별한 기금사용 방지를 위해 일부사항 제한

3)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 가능

4)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 법적 근거 마련

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4. 29. • 마감일자 : 2019. 6. 1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13.12월 의결)에 따라 2016년부터 사회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한 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인 단일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 조정(안 별표6)

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5의2 서식)

2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4. 29.
- 마감일자 : 2019. 6. 10.

○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 정비(안 제105조제1항)

1) 최근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5호가 개정(‘18.1.15 공포, ’19.7.16 시행)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추가 징수에 있어, 법 제40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이 모두 동일하게 부정수급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2.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4. 29.
- 마감일자 : 2019. 6. 10.

○ 의사상자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의 가점 적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3.19. 시행)됨에 따라 가점 적용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가점 적용(안 제11조의5 제1항)

1) 의사상자의 자녀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2) 가산 점수와 가산 방법 등은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함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본인 : 각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각과목별 만점의 3% 가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3)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에서 9명인 경우 본조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4. 30
- 마감일자 : 2019. 6. 10.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16267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에 따라 환경기준 등의 공표 기준·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

2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4. 30
- 마감일자 : 2019. 6. 10.

○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①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②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③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④체류자격부여, ⑤체류자격 변경허가, ⑥체류기간 연장허가, ⑦외국인 등록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4. 30
- 마감일자 : 2019. 6. 10.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과 체장·체중을 신설·조정하여 자원 회복의 가속화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 제1항관련) 개정

나.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 제1항관련)개정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4. 30
- 마감일자 : 2019. 5. 2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수준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를 설정취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4)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4. 30
- 마감일자 : 2019. 6. 10.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

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R&D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과기부 등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재에 따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명의 특허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1년)을 과학기술기본법령과 동일한 수준인 2년으로 확대 (별표1 제2호 가목 5)항)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 환수 실시 (별표2 제8호)

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과학기술기본법규와 일치(별표1, 2)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어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4)항)

3)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조정 (별표1 제2호 가목 11)항)

4)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사업비 환수 범위를 현행 ‘편취 또는 유용금액’에서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조정 (별표2 제6호)

28.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4. 30
- 마감일자 : 2019. 6. 10.

○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여성농어업 육성법」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검진대상, 시기, 항목, 비용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는 내

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주기, 항목 등 규정 (안 제6조 신설)

1)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규정(안 제6조 제1항)

2)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건강검진 지원시기, 항목, 비용 등을 규정(안 제6조 제2항 ~ 5항)

3) 다만,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농어업작업에 대한 유해인자, 검진항목,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별도 정하도록 위임

29.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1.
- 마감일자 : 2019. 6. 10.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임원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의3 신설)

1) 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작성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15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둠

나.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감독 (안 제12조의4 신설)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음

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규정 (안 제56조제7항 신설)

1)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업무 등의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정책영향

평가 업무 등 정책지원 사업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근거 규정 신설

30.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1.
- 마감일자 : 2019. 6. 10.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관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11조의4 등)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조항 정비

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5. 1.
- 마감일자 : 2019. 5. 22.

○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1)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2)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의2 및 제6조의3 신설)

3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5. 1.
- 마감일자 : 2019. 6. 10.

○ 체육지도자 자격 중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지도

자 자격요건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계획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법위 확대(안 제9조의2제2항)

1)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자격종목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의6제2항)

1) 자격종목 신설 등을 심사하는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 부칙 및 [별표3])

1) 자격검정·연수 일부 면제 요건을 학교체육교사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프로스포츠선수는 프로스포츠단체 ‘경기경력 3년이상인 자’로 명확화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자도 면제 대상자로 확대

2)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의 학교체육교사 특별과정에서 필기·실기·구술 면제를 ‘필기만 면제’로 조정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연수(2008~2011년 시행) 이수자 대상으로 필기·실기·연수를 면제하는 특례를 특례제도 시행(2015년) 10년 후인 2024년까지만 적용

라. 자격검정 및 연수계획 규정 간소화(안 제10조의4, 제11조의3)

1) 매년 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자격검정·연수 계획과 관련하여, 검정 장소, 시험위원, 연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빈번히 변동되는 사항은 자격검정·연수 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서 접수, 시행, 합

격자 발표 등의 일정 중심 계획으로 간소화

3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9. 5. 1.
- 마감일자 : 2019. 6. 10.

○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중 동계종목의 자격 취득을 위한 필기와 실기시험 절차를 개선하며, 실기 및 구술시험 통합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64조의2 신설)

1) 「국민연금법」 제9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③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⑤ 경매가 시작된 경우 ⑥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⑦ 재산의 은닉·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4.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5. 1.
- 마감일자 : 2019. 6. 10.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을 정함에 있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함에 따라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을 변경함

3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5. 2. • 마감일자 : 2019. 6. 11.

○ 골재수급 안정대책 (‘17.12.2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점용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1년 미만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기간에 대한 점용 사용료의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의 부과체계 개선(안 별표 2)

1)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원가의 100분의 20, 영해 등 연안에서는 바닷모래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산정기준을 채취해역의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일원화함(다만, 2020년 5월 31일까지는 도매가격의 100분의 15로 함)

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계산방법 개선(안 별표2)

1) 1년 미만의 끝수는 월할(月割)을 적용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일할(日割)을 적용하던 계산방법을 일할로만 계산하도록 변경함

3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5. 2. • 마감일자 : 2019. 6. 12.

○ 현재 소방서에서 운용 중에 있는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및 그 역할을 규정하고,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구급대원의 일상교육훈련 등의 업무수행을 담당하도록 구급지도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의 역할 규정(안 제7조의2)

1) 소방청 훈령에 규정된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펌뷸런스)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역할을 명시

나. 구급활동일지 서식 소방청장 위임 및 전자 이동단말기 사용(안 제18조)

1)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전자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구급지도사의 제도적 근거 및 역할 규정(안 제26조)

1) 소방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급강사 제도를 구급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급대원의 일상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담당하도록 법령상 근거 및 역할을 규정함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2.
- 마감일자 : 2019. 5. 2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38.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5. 2.
- 마감일자 : 2019. 5. 22.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품목인 액정 디바이스의 형태·용도 등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5. 2. • 마감일자 : 2019. 6. 11.

○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의제 사유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 편의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추가(안 제7조제5항제3호 신설)

1) 사업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봄

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의2)

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56호의2)

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5. 2. • 마감일자 : 2019. 6. 11.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조정(안 제51조)

1) 장애인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장애등급을 기준(장애 2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 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으로 구분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급 이상)” 으로 조정함.

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정비(안 제73조의3)

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에 부정수급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가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함.

41.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3.

○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소관기관의 의견 회신 기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1)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함.

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및 정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1)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법령해석 절차의 효율성 제고(안 제2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6조제9항)

1)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석 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규

정함.

라. 자치입법 지원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의 검토 지원, 자치법규의 정비 지원 및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2.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3.

○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소관기관의 의견 회신 기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1)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회신 기한을 정함.

나. 알기 쉬운 법령 검토 및 정비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1)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은 법제처장이 개선안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법령해석 절차의 효율성 제고(안 제2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6조제9항)

1)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석 요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자치입법 지원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9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이 자치법규의 입안 및 해석의 검토 지원, 자치법규의 정비 지원 및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심청구사건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가 접견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1조의2 신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안 58조제4항)

1) 현행 규정은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

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된 대통령령의 규정을 삭제함.

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1)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별도의 횟수와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더하여, 재심청구사건과 상소권회복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려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사건당 2회, 회당 60분씩 접견하게 하려는 것임.

2)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도관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는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세분화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2.

○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형자 처우등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분류처우위원회 회의를 추가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형 확정자에 대한 처우 등급의 신속한 확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벨트형포승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승줄에 대한 규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설비 종류의 변경(안 제38조)

1)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전국 교정기관으로 전송하고 각 기관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이용하여 시청 또는 청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설비인 비디오카세트레코더를 삭제하고, 라디오를 추가함.

나.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추가 개최(안 제99조제2항)

1) 분류처우위원회는 수형자의 처우등급, 재범위험성 등의 판단·결정 및 가석방 신청 대상자 선정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매달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확정자에 대한 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 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한 적시성 있는 수형자 처우를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 직후 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정고시 및 학사고시 응시 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7조제2항)

1) 작업이 부과되었거나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수형자가 독학으로 검정고시 또는 학사고시 등에 응시하려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형자 본인의 노력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형생활태도는 고려 사항에서 삭제하여 응시 기준을 완화함.

라. 벨트형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연승줄의 규격 신설(안 제179조제2항, 별표 20 신설)

1) 일반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을 이용하여 수용자 간 포승을 연결하고 있으며 벨트형포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승줄을 사용하여 수용자 간 포승을 연결하고 있는데, 연승줄은 보호장비인 벨트형포승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규격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마. 징벌집행부 조문 및 양식 신설(안 제229조제3항, 별지 제19호의2서식)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는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교정시설마다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성 있는 행정집행이 곤란하므로 징벌집행부 서식을 신설함.

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64조제1호 및 제4호, 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1항, 제270조, 제271조제1항, 제272조)

1)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심청구사건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수용자가 접견하려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접견 횟수 및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금지행위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조사 등 관련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17조제4항・제25조 신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29조제1항제5호・제7호 신설)

1)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공포(2018.12.31.)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안법 하위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4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2.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을 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함

나. 투자회사와 자본확충목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 등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는 제외)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4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2.

○ 제작자등 등록, 자기인증적합조사 업무의 체계 개선을 통해 관련 업무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업무 실효성 확보(안 제33조)

1)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자기인증능력 등을 검토 및 확인하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

나.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 수립주체 일원화(안 제40조, 안 제40조의10)

1)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연간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주체를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제시방법 간소화(안 제98조의2제1항)

1) 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재규정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홈페이지 주소나 접속방법을 기재하는 경우 인쇄물로 갈음한 것으로 간주

라. 제작자 등 등록업무 처리 등 전산화(안 제150조, 안 제150조의2)

1) 제작자 등 등록 신청부터 발급까지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하도록 전산화 근거 마련 및 미비점 보완

4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2.

○ 주택도시시금 대출에 자산심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의 요청범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방법등을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92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융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 수집 방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보증 상품 중 유사한 성격의 상품을 통·폐합하여 보증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며, 해외 신사업 발굴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유가

증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방법 및 자료의 범위(안 제25조의3)

1)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의 제출방법 및 요청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사항(안 제25조의4)

1)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시 포함사항,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해당 금융정보 제공 시 포함사항을 구체화함.

다.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안 제26조제1항)

1)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에 신청자 등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추가함.

라. 주택사업 대출보증 통폐합(안 제21조제1항제7호)

1) 현재 운용 중인 사업비대출 관련 보증을 주택사업금융보증으로 통 폐합하기 위하여 해당 보증의 정의를 명확히 함.

마. 해외건설펀드 투자 근거 마련(안 제22조제1항제2호)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추가함.

50.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2.

○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서명을 받아 1개월 내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망, 합병·분할 등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법 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서명을 받아 1개월 내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

에 신고하여야 하나, 사망, 합병·분할 등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5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5. 3.
- 마감일자 : 2019. 6. 12.

○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6310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마련(안 제24조의9)

1)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개정

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감경기준 마련(안 제24조의10)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